

헌법

1.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헌헌법(1948년)은 국회는 단원제로 하고 헌법재판기관으로 헌법위원회와 탄핵재판소를 두었다.
- ② 제3차 개정헌법(1960년)은 국회는 양원제로 하고 헌법재판기관으로 헌법재판소를 두었다.
- ③ 제5차 개정헌법(1962년)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 추천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국회의원이 임기 중 소속정당을 이탈한 경우 의원자격을 상실시켰다.
- ④ 제7차 개정헌법(1972년)은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과 국회의원 3분의 1의 선출권을 부여하였다.
- ⑤ 제8차 개정헌법(1980년)은 적정임금의 보장규정과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신설하였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 <보 기>

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48시간 가까이 구금되었으나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석방된 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충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사전에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에 권리구제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청구기간 내에 청구되지 않았다면 그 청구기간 내에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직권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① 나, 마 ② 다, 마
③ 가, 나, 다 ④ 가, 다, 라
⑤ 나, 다, 마

3.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 ① 변호사강제주의는 헌법소원뿐만 아니라 탄핵심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② 위헌법률심사에서 한정위헌결정이 내려지면 한정위헌결정도 위헌결정에 속하므로 일반적 기속력을 가진다.
- ③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위헌법률심판의 심사대상이 아니다.
- ④ 합헌결정된 법률에 대해 또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는 경우 이미 내려진 결정에 대해 계속 논의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므로 각하한다.
- ⑤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사적심사를 담당할 수 있다.

4. 양성평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 ②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32조 제4항이 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이고, 또한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 ③ 남녀의 성을 근거로 하여 차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성질상 오로지 남성 또는 여성에게만 특유하게 나타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예외적 경우에만 성차별적 규율이 정당화된다.
- ④ 단기복무군인 중 여성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로 볼 수 없다.
-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5. 평등권과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 ① 직무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경찰공무원과 달리 순직군경으로서의 보훈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다.
- ② A형 혈액형 환자들의 출생 시기에 따라 이들에 대한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허용 여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다.
-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이다.
- ④ 어음 발행인과 달리 부도수표 발행인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수표는 어음과는 본래적 성질을 달리 하므로 수표 발행인과 어음 발행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이다.
- ⑤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는 개인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이다.

6.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 <보 기> —

- 가.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미결구금을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 나.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 다. 법원의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그 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인정하지 않는 「범죄인인도법」 조항
- 라. 법무부 예규인 ‘특별관리대상자 관리지침’에 의한 수용자의 동행계호행위
- 마. 미결수용자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재판을 받을 때에도 법정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

- ① 가, 나 ② 나, 마
③ 가, 나, 마 ④ 가, 다, 마
⑤ 가, 나, 라, 마

7.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고,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③ 감사원은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대하여 감찰할 수 없다.
- ④ 감사원은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감찰할 수 없다.
- 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8.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 ①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시 청구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해당 규정은 주민소환 대상자의 공무원임권을 침해한다.
- ② 다른 지방선거 후보와는 달리 기초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해서만 정당표방을 금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하더라도 주민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에 관한 것은 대상지역 주민들의 인간다운 생활공간에서 살 권리 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⑤ 조례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권리구제를 위해서 당해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9. 선거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 ① 평등선거의 원칙은 투표의 수적인 평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 ② 모사전송 시스템을 이용한 선상투표와 같은 제도는 국외를 향해하는 대한민국 선원들의 선거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입법수단으로 충분히 수용될 수 있고, 입법자는 비밀선거원칙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③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해당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가 해당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의 편차 내에 있으면 허용된다.
- ④ 부재자투표 개시시간을 오전 10시로 정하는 것은 일과시간에 학업이나 직장업무를 하여야 하는 부재자투표자의 경우 사실상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이므로 부재자투표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 ⑤ 비례대표 후보자를 유권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명부식이나 가변명부식과 달리 고정명부식에서는 후보자와 그 순위가 전적으로 정당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반된다.

10. 국회의원의 자격과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 <보 기> —

- 가. 총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되지만,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일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 나. 국회는 의원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하거나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 다. 입법절차상의 하자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이 권한쟁의심판에서 확인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그 권한침해행위에 내재하는 위헌·위법성을 제거할 적극적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 라.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 주요 의안으로는 법률안,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안, 정부관계자의 출석요구안,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및 징계요구안 등이 있다.
- 마.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으며,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지만 국회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 ① 가, 나, 라 ② 가, 다, 마
③ 가, 라, 마 ④ 나, 다, 라
⑤ 나, 라, 마

11. 법률안의 발의, 제출 및 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 하되, 당해 법률안에 대하여 그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 ②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법률안의 발의 또는 제출은 국회의원, 위원회, 정부가 할 수 있는데, 위원회의 경우 법률안의 제출자는 각 위원회 소속의 발의의원이다.
- ④ 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한 경우 의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원은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12.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 ① 「형법」 상의 혼인빙자간음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②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 ③ 형사재판이 개시되기도 전에 「공정거래법」 위반자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그 범위반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 ④ 기부금품의 모집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침해이다.
- ⑤ 이륜차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13.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 ①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는 법률안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③ 대통령령임선서에서 규정한 성실한 직무수행의무도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지만 이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 ④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를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4.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 ①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헌법적 본질은 국민의 인신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킨 국가의 그릇된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원인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다.
- ② 형사보상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형사보상청구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③ 형사보상청구는 무죄판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형사피의자로서 구금되었다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풀려난 사람은 설령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었다라면 무죄판결을 받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헌법이 명하는 정당한 보상이라 함은 구금 중에 받은 적극적인 재산상의 손실과 구금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며, 구금되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소극적인 이익이나 기대이익의 상실 등은 청구할 수 없다.

15.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X)을 맞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 < 보 기 > —

- 가. 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제한이 없으나, 여론형성의 본질상 언어 이외의 전달방식은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 나. 알권리의 실현은 법률의 제정에 의해 구체화하는 것이 충실하고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될 수 있다.
- 다. 신문사 내부에서 경영인과 편집인 및 기자들의 상호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해서 규율되지만, 그 사법상의 계약에 의해서 편집보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신문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 때문에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 라. 자유언론제도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미디어(신문, 통신, 방송)간의 겸영을 금지하고 모든 일간신문의 지배주주가 신문을 복수소유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된다.
- 마. 정정보도청구의 요건으로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신문사업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가	나	다	라	마
①	○	X	○	○	X
②	○	○	X	X	○
③	X	○	X	○	X
④	X	○	○	X	○
⑤	X	X	○	○	X

16.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 ①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침해 금지 등의 민사소송에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변리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안경사의 안경제조행위 및 그 전체가 되는 도수측정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안과 의사의 의료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③ 입법자가 일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그 제도를 마련한 목적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제도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입법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 ④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운전전문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허가기간을 그 신청일로부터 2개월로 제한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기간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17.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 ①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 ② 토지거래허가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경제질서와도 충돌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사적자치의 원칙이나 헌법상의 보충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③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의 민주적 운영원리로 기능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라 볼 수는 없다.
- ④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법률 조항은 경제주체 간의 부조화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⑤ 국민연금제도는 상호부조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연대성에 기초하여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제도이므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강제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18. <보기>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 <보 기> —

노동조합 甲은 주식회사 A의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乙은 위 노동조합에 소속된 노동자이다. 노동조합 甲은 “2013. 4. 10.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주식회사 A 건물 앞의 인도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 丙에게 2013. 3. 15.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았다(접수번호 제1234호). 그런데 丙은 위 옥외집회가 주식회사 A의 총무과가 같은 일시에 제출한 옥외집회신고서(접수번호 제1235호)상의 옥외집회와 집회 시간 및 장소가 경합되어 상호방해 및 충돌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16. 노동조합 甲과 주식회사 A의 총무과가 제출한 두 신고서 모두에 대해 반려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였다. 그 통지문은 2013. 3. 30. 노동조합 甲 사무실에서 乙에게 도달되었다. 이에 노동조합 甲과 그 조합원 乙은 丙의 위와 같은 옥외집회신고서 반려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① 乙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2013. 3. 30.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헌법은 집회의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옥외집회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한 것이므로, 丙은 법률상 근거 없이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위 반려행위는 주무 행정기관에 의한 행위로서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 ④ 위 반려행위는 노동조합 甲을 상대방으로 한 것이므로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乙은 단지 위 옥외집회에 참가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 ⑤ 위 반려행위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은 인정된다.

19.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 ① 일본국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해당한다.
- ②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에 미실현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포함되더라도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③ 의료급여수급권은 저소득 국민에 대한 공공부조의 일종으로서 순수하게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재산권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종래 보수연동제에 의하여 연금액의 조정을 받아오던 기존의 연금수급자에게 법률개정을 통해 물가연동제에 의한 연금액조정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⑤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지정하고 그 경우 해당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지정목적에 맞는 건축제한 등 재산권 제한을 부과하면서도 아무런 보상조치를 규정하지 않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

20. 기본권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 <보 기>

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부여되어 헌법상의 정치적 기본권이 인정된다.

나. 미성년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나 기본권 행사가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친권에 의하여 기본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다.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 규정이라도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한국영화인협회와 학교법인의 기본권 향유능력을 긍정할 수 있다.

라. 정당의 기본권 주체성은 인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주체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외국인의 경우 국가배상청구권과 달리 범죄피해자보상청구권은 제한 없이 인정된다.

- ① 가, 라 ② 가, 마
③ 나, 다 ④ 다, 라
⑤ 라, 마

21. 「국적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 ②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 ③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 ④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 ⑤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22.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 ①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구 「군형법」 제47조는 그 내용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수범자인 군인·군무원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 알 수 없게 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 ②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를 같은 법률조항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다른 법률조항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을 인용하였다거나 그 내용 중 일부를 괄호 안에 규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 ③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의 「직접 진찰한」은 의료인이 「대면하여 진료를 한」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중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함축적인 표현은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불가피하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중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23. 사법권과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 ① 사법은 법 또는 권리에 관한 다툼이 있거나 법이 침해된 경우에 독립적인 법원이 원칙적으로 직접 조사한 증거를 통한 객관적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법을 해석·적용하여 유권적인 판단을 내리는 작용이다.
- ②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법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④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법원이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 ⑤ 군사법원의 경우, 관찰관 등이 군판사 및 심판관의 임명권과 재판관의 지정권을 갖고 심판관은 일반장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24.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름)

-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국가기관이므로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된다.
- ② 국회의 교섭단체가 국회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여 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 ③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④ 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⑤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며 종국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5. 헌법과 국회관련법에서 정한 국회의 정족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률안의결, 예산안의결, 조약동의, 일반사면동의, 예비비승인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 ② 본회의 의사정족수와 위원회 의사정족수는 각각 재적의원과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을 필요로 한다.
- ③ 국정조사 요구,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 발의, 대통령 이외의 자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 ④ 헌법개정안 발의, 계엄해제 요구,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의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 ⑤ 법률안 재의결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